<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일자별 시간표>

교시	학년	5/3 (월)	5/4 (화)	5/6 (목)	5/7 (금)	학년	5/3 (월)	5/4 (화)	5/6 (목)	5/7 (금)
1교시	3학년	세계지리/물리학Ⅱ	정치와 법/지구과학Ⅱ	세계사/화학Ⅱ	생활과윤리/생명과학Ⅱ	2학년	화학Ⅰ	지구과학Ⅰ	생명과학Ⅰ	물리학Ⅰ
2교시		생활과 과학	자율	실용수학/수학과제탐구/영어권문화	자율		한국지리	윤리와 사상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3교시		심화국어/고전읽기/기하	화법과 작문	영어독해와작문	경제수학/미적분		확률과통계	수학Ⅰ	문학	영어
4교시	점심시간						일본어Ⅰ/중국어Ⅰ	점심시간		
5교시	1학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점심시간			
6교시		정보	한문	한국사	사회					

<2021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시정표>

구 분		시 작	끝	비 고
조회	출결 확인	08:20	08:30	출결사항 기재, 휴대폰 제출
1 교시	문답지 배부	08:35	08:4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 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08:40	09:3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2 교시	문답지 배부	09:45	09:5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 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09:50	10:4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3 교시	문답지 배부	10:55	11:0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 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11:00	11:5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4 교시 (점심시간)	문답지 배부	12:05	12:1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 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12:10	13:0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조회	출결 확인	13:00	13:10	출결사항 기재, 휴대폰 등 제출
5 교시	문답지 배부	13:15	13:2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13:20	14:1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6 교시	문답지 배부	14:25	14:30	답안지는 부감독, 문제지는 정감독교사가 배부
	평가 진행	14:30	15:20	정감독 교사는 정면, 부감독 교사는 후면위치

<고사시 유의사항>

1. 부정행위 금지

-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협조자 포함) 교칙에 의거하여 처벌 및 해당 과목을 0점 처리함.
  : 휴대폰, 무전기, MP3 플레이어, PMP 등 부정행위에 사용 가능한 전자기기의 휴대 금지, 책상, 벽, 지우개, 쪽지, 앞 뒤(손, 발, 음성) 부정행위, 곁눈질 부정행위,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행위 등
- 시험시간에는 책상 위 필기구 이외에는 올려두지 않기 (필통 ×)

2. 고사 준비물

- 새 컴퓨터용 싸인펜
- 서답형 기술용 볼펜(검정색, 파란색만 가능)

3. 답안지의 작성 시 유의사항

- 예비 마킹 절대 불가(예비 마킹 시 오답 처리 됨)
- 서답형은 반드시 볼펜(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으로만 작성
  (연필, 샤프, 컴퓨터용 싸인펜, 빨간색 펜 사용 금지, 수정테이프 절대 금지)
- 답안지는 종료 5분전 까지만 교체 가능하고 종료령이 울린 후 바로 회수함
- 답안지 작성 시 마킹을 진하게 해주시길 바람. (리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음)

4. 학생 이동

-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 이동하지 않음.

5. 책상 배열

- 5줄로 배열함
- 고사 당일 **책상은 책상 속을 비우고 서랍이 교탁 쪽을 향하도록 돌려 배열**
  (고사 시간에 가방은 지퍼를 채워서 교실 앞쪽에 가지런히 정리 정돈)

6. 문제지 확인

- 문제지 매수와 문항수를 반드시 확인할 것

7. 답안 수정

- 선다형 : 수정테이프로 수정 가능
- 서답형 및 서술형 : 두 줄 긋고 다시 작성

※선다형 문항 수정시 수정된 문항의 번호를 아래 그림처럼 '선다형 문제 수정번호'란에 쓰도록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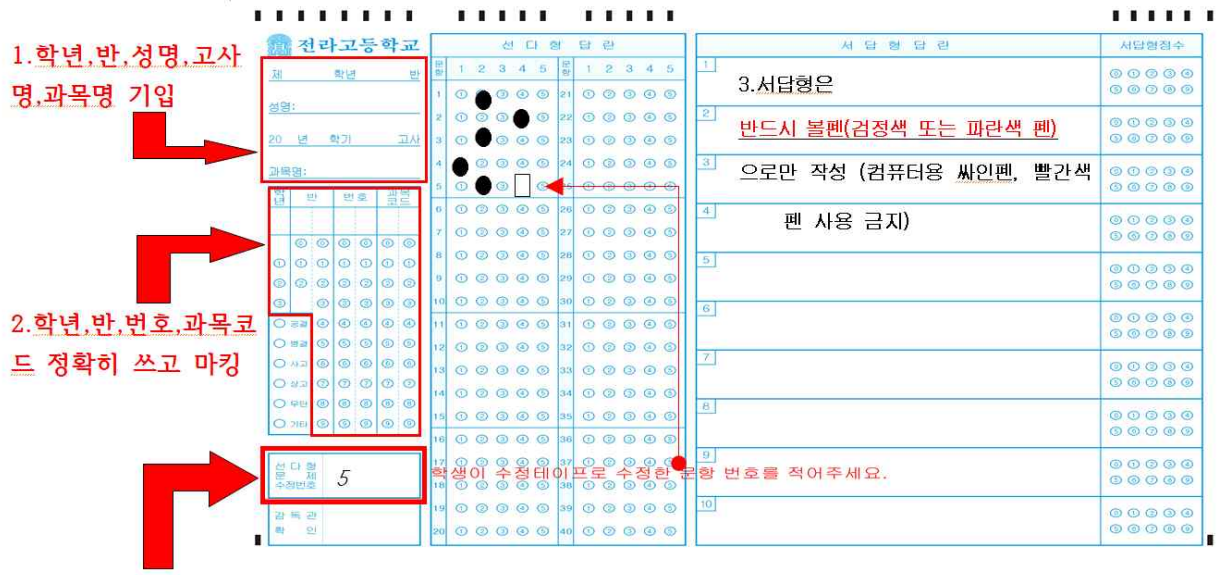
1.학년,반,성명,고사명,과목명 기입
2.학년,반,번호,과목코드 정확히 쓰고 마킹
4.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문항 번호 적는 곳
전라고등학교
학년
반
성명:
20 년 학기
고사
과목명:
선 다 형 답 란
서 답 형 답 란
서답형점수
3.서답형은
반드시 볼펜(검정색 또는 파란색 펜)
으로만 작성 (컴퓨터용 싸인펜, 빨간색 펜 사용 금지)
학생이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문항 번호를 적어주세요.

<지필평가의 결시자 인정점 처리>

1.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는 예외 없이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 감염병, 병원 입원 등으로 일반학생들과 함께 평가하기가 어려우나 학생과 보호자 등이 응시를 원할 경우 특별시험장을 설치하여 평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 그러나 결시를 하는 경우, 결시에 따른 기준점수와 인정비율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출결은 교육부 훈령에 기준하여 처리하며, 인정점 산출 방법에 따라 평가 인정점을 처리한다.

2. 지필 평가의 인정 기준점수 산출 (환산 전 점수 기준)
   가. 인정점 산출은 정상적인 평가에 참여한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아래 '다'항과 '라'항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
   다.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한다.
      1순위 : 이전 학기내 동일과목의 성적
      2순위 : 이전 학기내 가장 유사한 과목(교과)의 성적
      1, 2순위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라'항을 참고하여 기준점수로 활용할 수 있다.
   라. '다'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당 학기의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부여한다.

3.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을 활용한 최종인정점 산출 방법
   고사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생들의 과목별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인정점 산출

$$\text{최종 인정점} = \text{기준점수} \times \frac{\text{결시고사 평균}}{\text{기준고사 평균}} \times \text{인정점 부여비율}$$

과목	기준고사(1차고사)		결시고사(2차고사)	최종 인정점
	평균	기준점수	평균	
수학	68.0	65	62.3	47.64

* 1학기 2차고사를 질병 결시한 학생의 최종 인정점 계산
  1) 68.0 : 65 = 62.3 : 인정기준점수
  2) 인정기준점수 = (65×62.3) / 68 = 59.55
  3) 인정기준점수 × 0.8(병결 인정점 부여비율) = 47.64
  4) 최종 인정점 = 47.64

4. 인정비율
   가.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1). 천재지변, 전염병(격리수용),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결시(전염병의 경우,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감염병을 포함)

2). 병역 관계 등 공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단,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5). 공상으로 인한 결석

6).「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중의 결석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나. 8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2).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부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여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라. 0점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1). 부정행위자 및 부정행위 협조자 (해당과목에 한함)

2). 상기 1, 2, 3-가 이외의 결시

5.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상황 발생 시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기준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가.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이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의심증상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진단)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100%※※※

※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학생인 경우 등교 가능, 다

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코로나 19검사결과 '음성'이고 별도의 자가 격리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거나, 또는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 다만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등교중지가 되었으나,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별도 인정점 기준 적용 가능

나.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비율※※※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정기고사 기간에 원칙적으로 교외체험학습은 허용하지 않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는 학교장이 결정함

※※ 위의 상황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 실정에 맞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결정함

*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한 의심 증상 학생 결시 관련 제출 서류 안내

1. 의심 증상 학생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했을 경우(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는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를 제출
2.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의견서 및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를 제출